

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.

1. 징계대상

가. 성 명: 한 성 수

나. 생년월일: 1946.09.22.

다. 소 속: (주)감정평가법인경무 본사

(서울 강남구 봉은사로81길 9, 301호)

2. 징계내용

가. 징계종류: 업무정지 1년 7월 15일

나. 효력발생일: 2023.10.23. ~ 2025.06.06.

다. 사 유: 감정평가 과정에서 거래사례 선정,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불공정한 감정평가로 인해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며, 2023년 1월 20일 감정평가관리·징계위원회 의 기존 처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

2023년 10월 16일

국토교통부장관